

행동준칙

주식회사 서연이화

행동준칙

회사는 투명하고 책임있는 경영을 통해 기업의 이익을 증대시키고 주주 및 모든 이해관계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자 다음과 같이 “행동준칙규정”을 제정하고 실천지표로 삼는다.

1. 주주

- 1) 회사는 회사의 소유자인 주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, 모든 주주를 공정하게 대우한다.
- 2) 회사는 주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정하게 주주에게 제공한다.
- 3) 회사는 특정주주 또는 경영진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의 권익을 보호한다.

2. 이사회

- 1) 회사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이사회를 구성한다.
- 2)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,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과 정관을 준수한다.
- 3)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이사를 효과적으로 감독한다.
- 4) 회사의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에 입각하여 기업과 주주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종업원 · 소비자 ·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고려하여 직무를 수행한다.
- 5) 회사는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을 위하여 감사위원회를 2013년 9월 30일까지 설치하고,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이사회 내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- 6) 사외이사는 회사와 독립적인 관계이어야 하며, 회사의 이익을 위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수집·검토하고, 직무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투여한다.
- 7) 회사는 사외이사가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,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
3. 감사기구

- 1) 회사의 감사(또는 감사위원회)는 회사,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실질적 독립성을 유지하고, 이사와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적법성 감사, 내부통제시스템의 평가, 외부감사인의 선임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.
- 2)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여하여 감사에 임하고, 업무수행 중 지득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.
- 3) 회사는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감사업무를 지원한다.
- 4) 회사는 감사(또는 감사위원회 위원)이 감사업무에 필요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,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.

4. 이해관계자

- 1) 회사는 직원·고객·채권자·공급자·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보호하며,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한다.
- 2) 회사는 회사의 경영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.
- 3) 회사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한다.

5. 공시

- 1) 회사는 기업정보를 성실하고 신속하며 정직하게 공시한다.
- 2) 감사보고서 및 중요한 수시공시사항 등 주요 내용을 공시함에 있어 공시내용은 정보이용자가 이해하기 쉽고 명확한 용어를 사용한다.
- 3) 회사는 공시사항 외에도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공시하고 공개 범위나 시기에 있어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.